

세법학개론

4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 ②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그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 ③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 ④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⑤ 국세의 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42.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상호간의 우선관계는 압류에 관한 국세, 교부청구한 국세, 납세담보 있는 국세 순이다.
- ② 세무서장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여 납세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 ④ 가산금의 경우 법정기일은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다.
- ⑤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에 우선한다.

43.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 ②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 ③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⑤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44.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④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⑤ 세법에 따른 제출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 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45. <국세징수법> 甲과 乙과 丙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 중 甲의 지분을 「국세징수법」상 甲의 체납으로 공매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서장은 ‘공유자(채납자 제외)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의 공유자인 乙과 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乙 또는 丙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 ④ 세무서장은 乙과 丙이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 ⑤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이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한 乙 또는 丙에게 매각결정되었지만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매하여야 한다.

46.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채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 ㄴ. 압류에 관계되는 채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 ㄷ. 압류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ㄹ. 채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ㅁ. 제3자가 채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 ① $\neg, \supset$ ② $\supset, \square$ ③ $\neg, \supset, \square$
④ $\supset, \supset, \supset$ ⑤ $\neg, \supset, \supset, \square$

47.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시장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 ②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 ③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④ 세무서장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매각기관은 그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거나 직접 매수할 수 있다.
- ⑤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체납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48.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지방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에,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국세기본법」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을 후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그 재산은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49.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주류 또는 유류에 대한 조세범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할 수 있다.
- ③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면세유의 부정 유통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③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 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④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 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51.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 ① 거주자 甲은 이혼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② 사업자인 거주자 乙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처분하였다.
- ③ 거주자 丙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동생에게 증여하면서, 동생이 그 토지에 의하여 담보된 丙의 은행대출 채무를 인수하였다.
- ④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거주자 丁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 ⑤ 거주자 戊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경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였다.

52.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 ② 비거주자 甲이 국내에 두 곳의 사업장을 둔 경우,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 ③ 해외근무 등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乙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 ④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3.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때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 ②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와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 ③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 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54. <소득세법> 내국법인 (주)A(벤처기업 아님)는 정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하고 이를 등기한 후에 2018.3.20.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주식매수선택권(부여주식 수: 30,000주, 행사가격: 10,000원, 행사시기: 2022.3.20.부터 2027.3.20.까지)을 부여하는 계약을 임원인 甲(거주자)과 체결하였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는 행사를 제한하는 어떠한 특약도 없었고,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것이었으며, 미공개정보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甲이 (주)A에 재직하면서 2022.3.20.부터 2027.3.20.까지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② 甲이 2024.10.20. 퇴직한 후 다음 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③ 甲이 2020.6.20. 사망하고 2022.3.20.부터 2027.3.20.까지 사이에 그 상속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④ 甲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주)A 주식의 시가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이다.
- ⑤ 甲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 당해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55.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장세액공제를 받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이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거주자가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외국소득세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④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를 위하여 과세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56. <소득세법> 다음은 개인사업자인 거주자 甲이 사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2018.7.1.에 특수관계자인 乙에게 양도한 내역이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건물과 관련된 정보

- ① 양도가액은 6억원, 취득가액은 4억원이며,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다.
- ② 양도 당시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5,000,000원이며,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반영되었다.
- ③ 건물에 대한 취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13,000,000원이며, 취득 시 국민주택채권을 8,000,000원에 매입하여 즉시 사채업자에게 3,000,000원에 매각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동일한 날 금융회사에 매각한다면 2,000,000원의 매각 차손이 발생한다.
- ④ 양도 당시 건물의 시가는 620,000,000원이고, 건물의 보유기간은 5년 2개월이며 등기되었다.
- (2) 양도 시 중개수수료 9,000,000원을 부담하였고, 지출한 양도비의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였다.
- (3) 보유 중 납부한 재산세 합계액은 8,000,000원이다.
- (4) 당해 건물은 비사업용이 아니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10%,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시 12%,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시 15%를 적용한다.
- (5)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동 건물 외에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없다.

- ① 159,850,000원 ② 162,350,000원 ③ 162,850,000원
- ④ 188,500,000원 ⑤ 191,000,000원

57. <소득세법> 다음은 제조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자 甲(거주자)의 제18기(2018.1.1.~12.31.)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자료이다. 2018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손익계산서 내역

① 당기순이익은 100,000,000원이다.

② 인건비에는 대표자 甲의 급여 48,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③ 영업외손익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 예금이자 수익: 300,000원

- 업무용화물차 처분이익: 100,000원

- 사업관련 공장의 화재로 인한 보험차익: 5,000,000원

- 현금배당수익(배당기준일의 1개월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현금 배당임): 3,000,000원

- 유가증권처분이익(채권매매차익임): 1,000,000원

(2) 대표자 甲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제품 5,000,000원은 잡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동 제품의 판매가격 및 시가는 8,000,000원이다.

(3) 甲은 복식부기의무자이다.

① 104,700,000원

② 147,700,000원

③ 150,700,000원

④ 151,700,000원

⑤ 152,700,000원

58.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2018년도 중 계속 근로자임)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2018년에 지출한 의료비 내역이다. 2018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연 급여: 35,000,000원(비과세급여 3,000,000원 포함)

(2) 본인(34세)을 위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800,000원

본인의 국외 치료비: 4,000,000원

(3) 배우자(32세)를 위한 치료목적 한약비: 1,000,000원

배우자를 위한 난임시술비(「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 3,000,000원

(4) 부친(67세)에 대한 질병 치료비: 700,000원

(5) 모친(장애인, 62세)을 위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600,000원

(6)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소득은 없다.

(7) 부양가족은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니고, 본인 국외 치료비를 제외한 다른 의료비는 모두 국내 의료기관 등에 지출한 금액이며, 의료비 세액공제액 외 다른 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726,000원

② 831,000원

③ 876,000원

④ 1,431,000원

⑤ 1,476,000원

59. <소득세법> 다음은 내국법인 (주)A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거주자 甲의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근무기간: 2018.1.1.부터 2018.10.31.(퇴직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음		
(2) 급여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기 본 급 여 총 액	50,000,000원	기본급으로 월 5,000,000원 지급 받음
휴가비	5,000,000원	(주)A로부터 보조받은 휴가비임
강 연 수 당	4,000,000원	(주)A의 사내연수 강연수당임
인 정 상 여	2,000,000원	(주)A의 2017년도 귀속 법인세무조정시 발생한 것임
식사대	1,200,000원	월 120,000원(회사는 현물식사를 별도 제공하지 않음)
자 가 운 전 보조금	3,000,000원	월 300,000원(시내출장 등이 있을 시 甲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였고, 이에 소요된 실제 여비는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여비 규정에 의해 별도로 지급받았음)
(3)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① 44,590,000원 ② 44,840,000원 ③ 48,290,000원
 ④ 49,340,000원 ⑤ 50,090,000원

60. <소득세법>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甲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 등 관련 자료

- ① 연 급여: 93,000,000원 [식사대 2,400,000원(월 200,000원×12개월) 포함, 회사는 현물식사를 별도 제공하지 않음]
- ②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5,000,000원
- ③ 법령에 의한 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 2,400,000원
- ④ 법령으로 정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000,000원(국내에서 받았으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짐)
- ⑤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2) 甲은 상가건물을 2017년 12월 초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매월 임대료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약정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당해 임대사업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며, 2018년 필요경비는 10,000,000원이다. (임차인과는 특수관계가 아니며 임차기간 중 임차인 변동은 없고, 사업기간 중 휴업사실 없음)
- (3) 甲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를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은 10,000,000원이다.
- (4) 甲은 직장동료 乙에게 2018.4.1.에 1억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연 5%)는 1년 후 받기로 하였다. (甲은 금전 대여를 사업적으로 하지 않음)

- ① 89,560,000원 ② 93,360,000원 ③ 99,560,000원
- ④ 103,360,000원 ⑤ 123,100,000원

61.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상각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조업의 기계장치: 정률법
- ②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정액법
- ③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생산량비례법
- ④ 광업권: 생산량비례법
- ⑤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62. <법인세법> 「법인세법」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 ③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특정된 경우 그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 ④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중 하나의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 ⑤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63.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 ② 증자 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③ 이월익금
- ④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 ⑤ 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4.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및 결정·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법인도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신고서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④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경정한다.

65.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및 직전 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그 결손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천재지변 등 재해로 상실 전 자산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자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된다.
- ③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법인의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
- ④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를 추계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하다.
- ⑤ 결손금의 이월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이월하여 공제한다.

66.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제18기에 필요한 세무조정을 적정하게 하였을 경우, 이 같은 세무조정이 제18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운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익금과 손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손금에 대한 법정한도금액은 초과하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주)A의 제18기 결산서에 반영된 사항	비 고
배당금수익 1,000,000원(해산한 법인 (주)B의 잔여재산 분배로 인한 의제 배당)	● (주)B의 해산등기일: 2018.12.31. ● (주)B의 잔여재산가액확정일: 2019.1.31.
선급비용 1,000,000원(지출 후 이연 처리한 접대비)	● 접대비 지출일: 2018.12.31. ● 결산상 손비계상일: 2019.1.31.
영업외비용 1,000,000원(어음을 발행 하여 지출한 기부금)	● 어음발행일: 2018.12.31. ● 어음결제일: 2019.1.31.
영업외수익 1,000,000원(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처분이익)	● 매수자의 사용수익일: 2018.12.31. ● 대금청산일: 2019.1.31.

- ① (-)2,000,000원 ② (-)1,000,000원 ③ 0원
- ④ (+)1,000,000원 ⑤ (+)2,000,000원

67. <법인세법>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 상시근로자 50인)가 다음 자료를 근거로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의 세무조정을 적정히 하는 경우, 사내유보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할 금액의 합계는 각각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18기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의 기초잔액 및 관련 자료		
과목	기초잔액(원)	제18기 중 발생한 사항
토지	△8,400,000	토지의 절반을 현금 60,000,000원에 처분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0원을 결산서에 계상하였다.
건물	5,000,000	(주)A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며, (주)A의 대주주인 (주)B가 사용하고 있다. (주)A는 당해 건물의 외부도장 비용 2,000,000원을 현금지출하고, 이를 수선비로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기계장치	-	제18기 초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고, 취득대금 3,000,000원은 3년에 걸쳐 매년 말 균등상환하며, 취득대금의 현재가치 2,500,000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기계장치 2,5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500,000 (대) 장기미지급금 3,000,000

(2) 제17기 1.1.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 1대(「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로서의 요건은 모두 충족함)를 제18기 12.31.에 처분하고, 이에 따른 처분손실 11,500,000원을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사내유보	사외유출	사내유보	사외유출
① 3,500,000원	7,240,000원	② 4,200,000원	5,500,000원
③ 5,000,000원	4,200,000원	④ 7,700,000원	2,000,000원
⑤ 9,200,000원	2,000,000원		

68. <법인세법>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 세무조정과 관련된 다음 자료의 각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 이전 및 당기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지급이자

제18기 결산상 지급이자 40,000,000원이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제18기 중 차입금의 금액 변동은 없었고 차입금의 이자율은 연 5%이다. 제18기 3.15.에 (주)A의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하여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원이며, 지급이자에 대한 제18기 세무조정 결과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4,000,000원이다.

(2) 재고자산

상품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인설립시 후입선출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고 계속 적용해왔으나, 제18기 10.31.에 총평균법으로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제18기 결산시부터 기말 상품에 대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고 이를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기말 상품에 대하여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평가액은 각각 250,000원, ()원, 500,000원이며, 기말 상품에 대한 제18기 세무조정 결과 1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3) 임대료

제18기 5.1.부터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수령한 임대보증금은 123,200,000원이고 매월 ()원의 임대료를 수취하여 결산상 수익으로 반영하였다. 당해 사택의 시가는 480,000,000원이며,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5%이다. 시가에 해당하는 당해 사택의 적정한 임대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당해 사택 임대료와 관련된 제18기 세무조정 결과 2,320,000원을 익금산입하였다.

- | | <u> </u>
ㄱ | <u> </u>
ㄴ | <u> </u>
ㄷ | | <u> </u>
ㄱ | <u> </u>
ㄴ | <u> </u>
ㄷ |
|---|------------------------|------------------------|------------------------|---|------------------------|------------------------|------------------------|
| ① | 100,000,000 | 400,000 | 200,000 | ② | 100,000,000 | 400,000 | 300,000 |
| ③ | 100,000,000 | 600,000 | 200,000 | ④ | 120,000,000 | 400,000 | 200,000 |
| ⑤ | 120,000,000 | 600,000 | 300,000 | | | | |

69. <법인세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한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의 세무조정 결과 ㉠익금산업·손금불산업 합계와 ㉡손금산업·익금불산업 합계는 각각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1) 건물 A(취득가액 350,000,000원, 당기말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00원)를 당기말에 「보험업법」에 따라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당기 손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차) 건물 A 20,000,000 (대) 유형자산평가이익 20,000,000
- (2) 건설 중인 건물 B의 일부가 완성되어 업무에 이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당해 완성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6,000,000원이다.
- (3) 전기에 취득한 건물 C(취득가액 30,000,000원,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7,000,000원, 전기말 상각부인액 4,000,000원)의 결산상 당기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3,000,000원이다.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고 내용연수는 10년이다.
- (4) 건물 D(취득가액 5억원,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0원)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로 20,000,000원을 지출하고, 이를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회계처리하였다. 당해 건물에 대하여 제18기 결산상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없으며,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고 내용연수는 10년이다.

	㉠	㉡
①	0원	0원
②	0원	5,000,000원
③	6,750,000원	0원
④	6,750,000원	5,000,000원
⑤	9,250,000원	11,000,000원

70.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의 세무조정 및 신고·납부 관련 자료이다. 각 ()에 들어갈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1) (주)A가 2015년에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자회사 (주)B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액 10,000,000원이 제18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A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한다. (주)A는 동 배당금과 관련하여 ()원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법정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당해 외국법인세액을 제18기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주)B에 대한 (주)A의 출자비율은 40%이며, (주)B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3억원과 1억원이다.
- (2) 제18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주)A의 개인주주 甲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수익 20,000,000원과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배당금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모두 국내에서 지급받으면서 ()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였다.
- (3) 가산세 3,000,000원을 포함한 자진납부할 세액이 18,000,000원으로 산출되어, 분납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원은 분납하기로 결정하였다.

- ① 8,000,000 ② 10,400,000 ③ 12,200,000 ④ 14,400,000 ⑤ 15,000,000

7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③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72.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7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 ②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 ③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 ④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7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를 처음 공급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환입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ㄷ.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5. <부가가치세법>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甲은 2018.1.1.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전환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이 다음과 같으며 모두 매입세액공제대상일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甲은 일반과세자 전환시 보유자산에 대한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고 자산의 취득은 적격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음)

(1) 2018.1.1. 현재 보유자산 현황(취득가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취득일자	취득가액	장부가액	시 가
건물	2014.6.5.	220,000,000원	120,000,000원	230,000,000원
비품	2016.4.25.	44,000,000원	18,000,000원	24,000,000원
상품	2017.12.20.	22,000,000원	22,000,000원	26,000,000원

※ 건물과 비품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이다.

(2)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은 10%로 가정한다.

- ① 7,200,000원 ② 12,600,000원 ③ 14,400,000원
 ④ 15,600,000원 ⑤ 16,200,000원

76.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18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감 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공급내역

기 간	업 종	공급대가
2018.1.1.~6.30.	음식점업	22,000,000원
2018.7.1.~12.31.	음식점업	23,000,000원
합 계		45,000,000원

- (2) 공급대가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액은 8,000,000원이다.
 (3) 농산물 구입은 계산서 수취분이며 농산물 가액은 1,090,000원이다.
 (4) 대형마트를 통한 조미료 등의 구입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며 매입세액은 1,000,000원이다.
 (5) 음식점업의 업종 부가가치율은 10%이다. 2018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세액은 없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6) 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고, 세액공제 등에 대해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며, 甲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다.

- ① 0원 ② 52,000원 ③ 61,260원 ④ 152,000원 ⑤ 161,260원

77.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2018.10.1.에 과세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제조업) 甲의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내역이다. 甲이 2018.12.1.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때, 사업자미등록에 대한 가산세는 얼마인가? (단,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 분	10.1.~10.31.	11.1.~11.30.	12.1.~12.31.	합 계
매 출	75,000,000원	60,000,000원	55,000,000원	190,000,000원
매 입	40,000,000원	20,000,000원	25,000,000원	85,000,000원

- ① 0원 ② 750,000원 ③ 1,050,000원 ④ 1,350,000원 ⑤ 1,900,000원

78.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A(제조업)의 공급에 대한 다음 자료에서 2018년 제2기 과세기간(2018.7.1.~12.31.) 공급가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1) 2019.1.31.에 인도 예정인 재화(공급가액 1,000,000원)에 대한 대가를 2018.12.20.에 모두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였다.
- (2) 2018.9.1.에 할부판매 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하고, 공급가액 1,000,000원은 10월 말부터 2개월마다 4회에 걸쳐 받기로 하였다.
- (3) 2018.5.1.에 인도를 완료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그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2018.10.31.에 연체이자 1,000,000원을 수취하였다.
- (4) 2018.12.1.에 상품권 1,000,000원을 현금판매하였고, 그 후 당해 상품권은 2019.1.10.에 현물과 교환되었다.

- ① 0원 ② 1,000,000원 ③ 2,000,000원 ④ 3,000,000원 ⑤ 4,000,000원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가 간 조세 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이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체약상대국에 납부할 조세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해 주도록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 불복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획득하여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 ⑤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② 재판매가격방법
- ③ 원가가산방법 ④ 매출총이익률방법
- ⑤ 이익분할방법